

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(진선미의원 대표발의)

로써 청소년의 자치권 및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5조의2).

의안 번호	6186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3. 15.
발의자 : 진선미 · 전재수 · 추혜선
박주민 · 이정미 · 이학영
송옥주 · 도종환 · 신경민
윤종오 · 박홍근 · 권미혁
소병훈 · 최명길 · 손혜원
박남춘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스스로의 판단으로 자유롭게 활동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.

그러나 청소년기의 발달과정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청소년 자치활동 활성화, 청소년 참여기구의 설립 등의 참여권에 해당하는 정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 속에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임.

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정책을 심의 · 협의 · 조정하는 기구에 청소년을 포함시키도록 하고,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 ·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제안이 정책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

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

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제2항 중 “수렴하여야 한다”를 “수렴하여야 하며,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·협의·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·협의회 등의 기구에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

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⑥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침

현 행	개 정 안
제5조의2(청소년의 자치권 확대)	제5조의2(청소년의 자치권 확대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·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<u>수렴하여야 한다.</u>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수렴하여야 하며,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·협의·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·협의회 등의 기구에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.</u>
③ (생 략) <u><신 설></u>	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</u>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신 설>

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⑥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